

[별표 1]

기타 수질오염원(제2조관련)

시설구분	대 상	규 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養鰻場) 또는 일반양어장 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면허대상 수조면적 합계 500 ㎡ 이상 수조면적 합계 500 ㎡ 이상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기구·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 200㎡ 이상 (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 면적 1,500㎡ 이상
4. 농·축·수산 물 단순가공 시설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 1일 5㎥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 용량 10㎥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 에는 물 사용량 1일 20㎥ 이상)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작시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 1대 이상
6.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 또는 안경점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폐수발생량 1일 0.01㎥ 이상 1대 이상

비고 :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이라도 증발과 누수에 의하여 줄어드는 양에 해당하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의 경우는 제외한다.